

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2020.3.1.(일) 22:00,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※ 국가지역별 가나다순

□ 입국금지 조치 : 36개 국가지역

※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이에 포함

구 분	조치 사항	
아시아 태평양	마셜제도	▶ 2019.12.31. 이후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
	마이크로 네시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말레이시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, 사라왁주(보르네오 섬 위치) 및 사바주 입국금지(2.29.) 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·경유금지 ※ 말레이시아 국민,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(2.28.) ※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(2.28.)
	몰디브	▶ 3.3.부터 한국(대구, 경상도, 부산, 서울, 경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예정
	몽골	▶ 2.27.-3.11.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바누아투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※ 2019.12.31.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(2.28.) ※ △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(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), △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 확인서 제출, △왕복 항공권 필요
	베트남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내 감염증 발생지역(대구·경북)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(2.26. 21시 시행) /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(2.29) ※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(대구·경북)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각 대사관에서 베트남 외교부와 협의 필요 ※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(1.31) ※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(2.29. 중국은 2.2 기초치 중)
	사모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(2.19.)
	사모아 (미국령)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2.7.)
	솔로몬제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홍콩, 태국, 이란, 대만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
	싱가포르	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※ 싱가포르 국민, 영주권자,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 격리(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)를 조건으로 입국허용(2.27.)
	일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룩셈부르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9)	

구 분		조 치 사 항
	키리바시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가능(2.11.)
	투발루	▶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피지	▶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경북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
	필리핀	▶한국(대구·경북), 중국,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홍콩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※ 홍콩 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·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(2.25.)
미주	엘살바도르	▶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 ※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
	자메이카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※ 영주권 보유자,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, 조건부(검사 및 격리) 입국허용
	트리니다드 토바고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유럽	키르기스스탄	▶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.)
	터키	▶(이스탄불) 체류허가(이카멧)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.) ※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,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조치
중동	레바논	▶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※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
	바레인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1.) ※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(검사, 격리 등) 입국허용
	사우디	▶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※ 관광(Tourism)비자가 아닌, 여타 비자(취업(Work), 사업(Business), 상용(Commercial), 가족방문(Family Visit) 등)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
	요르단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3.) ※ 중국(2.2), 이탈리아(2.24)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
	이라크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
		▶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중국,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(2.26)
	이라크	▶(쿠르드지방정부)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
	이스라엘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팔레스타인	▶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쿠웨이트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(환승 포함)금지(2.25.) ※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비자(3개월 유효)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

구 분		조 치 사 항
		류허용
아프리카	마다가스카르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(2.28.)
	모리셔스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 3개주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(2.24.)
	세이셸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
	앙골라	▶3.3.부터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나이지리아, 이집트,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9.)
	코모로	▶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7.)

□ 입국절차 강화(검역 강화, 격리 조치 등) : 45개 국가지역

가. 중국 지역

※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

구 분		조 치 사 항
중국 (지역별)	산둥성	▶ <u>칭다오 류팅공항</u> 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,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(2.24) ▶ <u>산둥성 웨이하이공항</u> 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(2.25) ▶ <u>산둥성 옌타이공항</u> 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2-3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자가격리(2.26)
	랴오닝성	▶ <u>다롄공항</u>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(2.25) ▶ <u>선양공항</u> 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(2.26)
	지린성	▶ <u>창춘공항</u>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<u>확진자 탑승 확인시</u>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(2.26) ▶ <u>옌지공항</u> 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(2.26)
	헤이룽장성	▶ <u>하얼빈공항</u>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2.26)
	광둥성	▶ <u>선전공항/광저우바이윈공항</u> ,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지정호텔 격리,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전원 별도장소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(전원 음성판정시 귀가, 1인 이상 양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)(2.27)
	푸젠성	▶ <u>샤먼공항</u>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 시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(2.29)
	상하이시	▶ <u>푸둥/홍차오공항</u> ,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,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자체 건강관리(1일 2차례 체온측정) 및 보고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(2.27)
	장쑤성	▶ <u>난징공항</u>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(2.26)

저장성	▶ 항저우공항 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호텔 격리,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(2.29)
톈진시	▶ 톈진공항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,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격리 후 발열자 1차 핵산검사 양성판정 경우 전원 검사 실시, 발열자 2차 양성판정 또는 미발열 승객중 1명 이상 양성판정 경우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, 발열자 음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(2.29)
충칭시	▶ 충칭공항 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별도 지정호텔 14일간 격리(3.1)
베이징시	▶ 베이징공항 ,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 후 14일간 격리(2.27)
산시성 (陝西省)	▶ 시안 셴양공항 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(한국인은 희망시,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병원 대기 후 발열자 양성판정시 병원 격리, 발열자 음성판정시 지정호텔 격리(한국인은 희망시,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)(3.1)
쓰촨성	▶ 청두공항 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로 전환, 양성판정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14일간 별도 지정호텔 격리(2.28)

나. 기타 지역

구분	조치사항	
아시아 태평양	대만	▶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5.)
	라오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(2.27.)
	마카오	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(별도 지정장소) 조치(2.26.) ※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,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
	인도	▶ (비자) 한국, 일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(2.28.) ※ 인도대사관,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(단, 기발급된 모든 비자(e-비자 등 포함)는 유효) -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(여권 내용 확인) 및 방문 필요성(비즈니스 등)을 감안,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이며, 전자비자(e-비자)는 중단
	태국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/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콧물 등)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, △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, △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(2.23.)
	폴리네시아 (프랑스령)	▶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/의료소견서 제출(5일내)(2.27.)
미주	멕시코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시 14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 후 의료진 문진 또는 전화 모니터링 실시, △경증증상 시 병원 이송 후,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(2.28.)
	세인트루시아	▶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 조치(2.26.)
	세인트빈센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

구분		조치 사항
	그레나딘	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(2.28.)
	에콰도르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,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, △확진 시 14일간 격리조치, △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(2.28.)
	온두라스	▶ 한국, 중국, 대만, 일본,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, △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, △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조치(2.20.)
	콜롬비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, 이탈리아, 태국, 아랍에미리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(2.24.)
	파나마	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일부 지역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△건강상태 문진, △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(2.27.)
	파라과이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태국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(2.29.) - 인터뷰를 통해 대구·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
유럽	라트비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이란,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113에 신고, △의무샘플 검사 실시, 자가격리, 모니터링 실시 후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(2.28.)
	북마케도니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(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) 대상 보건당국(Bitola Public Health Centers)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(2.27.)
	불가리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4.)
	벨라루스	▶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(2.25.)
	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발열검사, △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※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(2.24.)
	사이프러스	▶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(2.28.)
	세르비아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문진 실시, △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, △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(자가/격리시설), △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(2.27.)
	아이슬란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조치, △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(2.26.)
	아제르바이잔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(2.28.)
	알바니아	▶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

구분		조치 사항
	영국	▶ 대구·청도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, 보건의료서비스(NHS)에 통보의무 부과(2.25.)
	우즈베키스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(별도지정 장소) 조치(3.1.)
	카자흐스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대만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,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(3.1.) -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▶ 공항 내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 후 출국,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조치(3.1.)
	크로아티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(6~10시간 소요 등) 실시, △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, △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(2.26.)
	타지키스탄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조치(2.25.)
	투르크메니스탄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조치(2.28.)
중동	모로코	▶ 한국, 중국,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, △발열검사 등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, 의무 샘플 검사 실시(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)(2.28.)
	오만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싱가포르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조치(2.22.) ※ △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, △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
	카타르	▶ 한국, 중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조치(2.25.)
	튀니지	▶ 모든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, △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, △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, △37.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조치, △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(2.25.) ※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
아프리카	가봉	▶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조치(2.29.)
	나이지리아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, △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(2.29.)
	말라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(지정시설) 조치,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
	모잠비크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6.)
	앙골라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나이지리아, 기니비사우, 이집트,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14일 이상 격리(지정시설) 조치(2.29.)
	에티오피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전화 모니터링, △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(2.18.) 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, 검역신고서 등 서류 추가 작성 요구(2.28.)
	우간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7.)

구분	조치사항
잠비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6.)
짐바브웨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시 격리조치, △무증상 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·제출, △필요 시 21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6.)
케냐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

끝.